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  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『2022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- 문화체육과 -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1. 11. 23.

行 政 委 員 會  
專門委員 金 玉 然

# 『2022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416호로 2021년 11월 1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| 안건<br>번호 | 사 업 명       | 사 업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연금액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 |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|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시설<br>운영·관리, 문화예술 정책<br>및 문화도시 업무 추진 등<br>(문화체육과) | 5,194,000 |

### 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
(기본재산의 조성),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)

## 5. 검토의견

○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, 구민회관 운영 등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○ 검토 결과

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
- 따라서, 위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재정법

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20조(재정 지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**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